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임이자·김태호·김형동

김위상 • 곽규택 • 김성원

김종양 · 최수진 · 권영세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u>배우자 출산휴가</u> 를	<u>배우자 출산휴가</u>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른 난임치료휴가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u>경</u>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2
<u>기간</u>
<u>경우로</u>
<u>.</u>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
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
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u>ਜ</u> ੰ
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u>.</u>